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11. 15 선고 2012나11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2. 22 자 2016재나13 결정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11. 15 선고 2012나1157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23 선고 2010가단23220 판결

전 문

원고 승계참가인,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

피고, 항소인 A

변론 종결 2013. 10. 29.

판결 선고 2013. 11. 15.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0가단23220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,743,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1. 12. 2.부터 2013. 11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1. 12. 1.부터 별지 목록 제1, 2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2,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10%는 원고 승계참가인이, 나머지 9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,

가.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42,541,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1. 12. 1.부터 위 나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2,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, 여기에서 '사유가 없어진 후'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,

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보를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. 12. 23.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판결정보도 2011. 12. 30.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2. 1. 17.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'판결문 이행 촉구 알림'이라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12. 1. 27.경 재판기록을 열람하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이후 2주일 이내인 2012. 1. 30.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과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,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.

2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는 원래 철도청이 관리하던 국유지였는데,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5. 1. 1.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2005. 3. 25.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. 8. 6. 아시아신탁 주식회사(제1심의 원고였으나,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 소는 취하 간주됨, 이하 '아시아신탁'이라 한다)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0. 8. 26.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아시아신탁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무단사용금채권도 양도하였다.

다.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이 건립되어 있는데, 피고는 1983. 4. 29.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·사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D의 일부 증언,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용산구마포구 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, 사용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,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5. 1. 1.부터(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위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)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,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,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.

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피고는, D의 부친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1965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며 20년간 평온, 공연하게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1984년 1월경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D의 부친이나 D, 피고 모두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있었고,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무단사용에 관한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, D의 부친이나 D,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(3) 피고는, D의 부친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철도청이나 그

승계인은 D의 부친이나 피고에게 퇴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,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, 피고에게는 재산적 손해만 끼치므로,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청구가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없고, 철도청이나 그 승계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,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(4) 피고는,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권을 양도받았고,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는 'E 재개발 지역주택조합'이 설립되어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, 원고 승계참가인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,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, 피고가 위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.

다.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

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토지의 2005. 1. 1. 부터 2011. 2. 18.까지의 기간별 임료는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2011. 2. 19. 이후의 임료도 2011. 2. 18. 당시의 임료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2005. 1. 1.부터 2011. 11. 30.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,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6,917,169원이 된다.

한편,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2008. 5. 20.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변상금 1,173,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돈은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.

따라서,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,743,289원(36,917,169원 - 1,173,880원)과 이에 대하여

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1. 12. 2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. 11. 15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1. 12. 1.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2,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.

그런데,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, 제1심 판결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고충정

판사서보민

판사손승온

별지